

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수 정 안

관련의안번호
제 190 호

제안일자 : 2016. 3. 21.

제 안 자 : 행정재경위원장

1. 수정이유

조문의 목적과 정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조항의 내용 변경에 따라 조 번호를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내용을 간결하게 함.(안 제1조)

나. 정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함.(안 제2조).

다. 제3조를 신설함.(안 제3조)

라. 조 제목 및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제3항을 신설함.

(안 제4조, 제4조제1항, 제4조제2항, 제4조제3항)

마. “등” 을 삭제함.(안 제5조제1항제5호)

바. “다만, 구청장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.” 로 수정함.(안 제6조)

사 조 제목을 “지원절차 등” 로 “방법대 설립 및 등록 신고서” 를 “방법 활동계획서(이하 ” 계획서라 한다)” 로 하고, “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

식을” 를 “그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” 로 수정함.(안 제7조)

아. 제3조제3항 및 제3조제4항을 제7조제3항으로 통합하여 수정함.

(안 제7조제3항)

자. 제7조를 제8조로 변경하고, 조문내용 중 “방법대의” 를 삭제하고, 제8조제2항제5호를 신설 하며 조문내용을 수정함.(안 제8조)

차. 제8조를 제9조로 변경하고, 조 제목 “지도 및 감독” 을 “감독 및 평가” 로 수정함.(안제9조)

카. 제9조를 제10조로 조 번호를 변경함.(안 제10조)

타. 제10조를 제11조로 조 번호를 변경함.(안 제11조)

파. “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 를 신설함.

(안 제12조)

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수 정 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안 제1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자율방범봉사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안 제2조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주민자율방범봉사대(이하 “방범대”라 한다)”란 각 동에서 질서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순찰 등 방범활동을 협조하고 지원하는 자율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.

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명칭) 주민자율방범대의 명칭은 “서울특별시 강남구 ○○동 주민자율방범봉사대”로 한다.

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조 제목 “조직 및 구성”을 “방범대 지원기준 등”으로 하고,

제4조(방범대 지원기준 등) ① 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

장”이라 한다)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방법대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③ 방법대는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법일지, 활동실적,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·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.

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임무) 방법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및 범죄 신고
2.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
3.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항
4.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
5. 그 밖에 구민 보호 및 구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활동범위) 각 방법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지역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.

안 제3조(설립 및 등록)를 제7조(지원절차 등)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지원절차 등)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법대는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방법활동계획서(이하 “계획서”라 한다)를 해당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익상의 필요성, 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·확인하여 그 결과는 별지 제2호서

식으로 작성하여 방법대에 알려야 한다.

③ 방법대의 대표자는 대표자, 방법계획, 방법대원 변경, 인원수 등 방법대의 계획서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안 제7조 를 제8조 변경하고, 제8조제2항제5호를 신설 하며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경비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방법대의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간식비
2. 방법초소 소모성 운용비
3. 피복 및 순찰장비 구입비
4. 순찰차량 유류비
5. 그 밖에 방법활동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실소요액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차감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.

1.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
2. 제출한 계획서 및 방법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3. 제9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
4. 방법대원이 사회적 물의 또는 방법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
5.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

안 제8조를 제9조로 변경하고, 조 제목 “지도 및 감독” 을 “감독 및 평가” 로 수정하고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감독 및 평가)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방법대의 방법일지와 예산사용, 그 밖의 활동 실적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.

③ 방법대 평가의 방법, 내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안 제9조를 제10조로 변경한다. 구청장은 방법대원의 방법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

안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변경한다.

제11조(포상) 구청장은 방법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방법대 및 방법대원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.

안 제12조(규칙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강남주민의 야간에 안전하고 질서 있는 생활 환경과 청소년 및 부녀자,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기 조직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생활 환경 조성</u>에 기여할 수 있도록 <u>필요한 사항을 정함</u>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<u>안전하고 질서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주민자율방범봉사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</u>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운영비 지원 등) 주민자율방범봉사대에 참여하는 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정의) “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”(이하 “<u>방범대</u>”라 한다)란 관할 동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자율적인 방범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</p>	<p>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“<u>주민자율방범봉사대(이하 “방범대”라 한다)</u>”란 각 동에서 질서 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순찰 등방범 활동을 협조하고 지원하는 자율적인 주민조직</p>

<신 설>

서울특별시 강남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설립·등록된 조직을 말한다.

을 말한다.

제3조(명칭) 주민자율방범대의 명칭은 “서울특별시 강남구 ○○동 주민자율방범봉사대”로 한다.

<신 설>

제4조(조직 및 구성) ①
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거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내에서 조직을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방범대 지원기준 등) ①

----- 지원하는 것을 -----
----. 다만,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② 방범대는 대장·부대장·총무 및 대원(이하 “방범대원”이라 한다)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② 방범대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③ 방범대는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

<신 설>

제5조(임무)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및 범죄 신고
2.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
3.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항
4.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
5. 그 밖에 구민 보호 및 구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

<신 설>

제6조(활동범위) 각 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

보호기 위하여 방법일지, 활동실적,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·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임무)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4.(개정안과 같음)
5. -----

제6조(활동범위) -----

행정동의 관할지역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3조(설립 및 등록) ① 방법대를 설립·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른 방법대 설립 및 등록 신고서를 해당 동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·확인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③ 구청장은 신고사항이

--. 다만, 구청장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절차 등)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법대는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방법활동계획서(이하 “계획서”라 한다)를 해당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-----
----- 계획서를 -----
----- 공익상의 필요성, 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·확인하여 그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방법대에 알려야 한다.

③ 방법대의 대표자는 대

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설립 등록증(별지 제3호서식)을 교부하여야 한다.

표자, 방법계획, 방법대원 변경, 인원수 등 방법대의 계획서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<신 설>

④ 방법대의 대표자는 방법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<삭 제>

<신 설>

제7조(경비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법대의 자율방범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경비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방법대의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간식비
2. 방법초소 운영비(초소 난방 유류비, 초소 수리비 등)

1. -----

 2. 방법초소 소모성 운영비
- <괄호내용삭제>

<신 설>

3. 피복 및 순찰장비 구입비

4. 순찰차량 유류비

5.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법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차감 또는 중단할 수 있다.

1. 3개월 이상 방법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

2. 지원금을 방법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

3. 제8조에 따른 행정 지도를 거부한 경우

4. 방법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

3. ~ 4.(개정안과 같음)

5. 그 밖에 방법활동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실소요액

② -----

--.

1.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

2. 제출한 계획서 및 방법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
3. 제9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

4. 방법대원이 사회적 물의 또는 방법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을

등 방법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<신 설>

<신 설>

제8조(지도 및 감독) ①

구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② 구청장은 방법대의 방

범일지 작성 및 활동실적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③ 제7조 제2항 제1호에

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야기한 경우

5.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

제9조(감독 및 평가) ①

구청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 및 평가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

서식에 따른 방법대의 방법일지와 예산사용, 그 밖의 활동 실적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.

③ 방법대 평가의 방법,

내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

<p><신 설></p>	<p>제9조(교육) 구청장은 방 법대원에게 방법 활동 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.</p>	<p>따로 정한다. 제10조(교육) 구청장은 방법대원의 방법활동 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.</p>
<p><신 설></p>	<p>제10조(포상) 구청장은 방법 활동 실적이 우수 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 한 방법대 및 방법대원 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포상) 구청장은 방법 활동 실적이 우수 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 한 방법대 및 방법대원 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.</p>
<p><신 설></p>	<p>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 서 정한 사항 외에 지 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 별시 강남구 지방보조 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<삭 제></p> <p>제12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신 · 구별지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지 제1호 서식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col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민자율방범봉사대 설립 및 등록 신고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처리기간 7일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upright;">설립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① 대표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한 글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한 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② 생년월일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colspan="4">③ 주소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6"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upright;">신청내용</td> <td colspan="4">④ 명칭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>⑤ 목적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⑥ 초 소 위치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연락처 :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>⑦ 총원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>⑧ 시 설 · 장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>⑨ 설 립 연 월 일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>⑩ 순 찰 동 선(범 위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·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</td> </tr> <tr> <td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upright;">구비서류</td> <td colspan="4"> 1.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현황 1부 2. 주민자율방범봉사대 대원 명단 1부 3. 주민자율방범봉사대 근무조 편성표 1부 </td> </tr> </table>	주민자율방범봉사대 설립 및 등록 신고서				처리기간 7일	설립자	① 대표자	한 글			성명	한 자	② 생년월일			③ 주소				신청내용	④ 명칭				⑤ 목적				⑥ 초 소 위치		(연락처 :)		⑦ 총원				⑧ 시 설 · 장				⑨ 설 립 연 월 일				⑩ 순 찰 동 선(범 위)				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·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					구비서류	1.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현황 1부 2. 주민자율방범봉사대 대원 명단 1부 3. 주민자율방범봉사대 근무조 편성표 1부				<p><현행과 같음></p>	<p>[별지 제1호서식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주민자율방범봉사대 활동계획서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봉사대명</td> <td colspan="3">서울특별시 강남구 ○○동 주민자율방범봉사대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upright;">대표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 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년월일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연락처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>주 소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upright;">방법 현황</td> <td colspan="2">초 소 위치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연락처 :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>총 인 원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>초 소 형태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>초 소 크기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upright;">방법 활동</td> <td colspan="4">시 설 · 장 비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목적</td> <td colspan="3"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계획</td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6하 원칙에 의거 작성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>순찰 동선 범위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에 따라 20 년 방법대 활동계획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</td> </tr> <tr> <td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upright;">구비서류</td> <td colspan="4"> 1.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현황 1부 2. 주민자율방범봉사대 대원 명단 1부 3. 주민자율방범봉사대 근무조 편성표 1부 </td> </tr> </table>	20 년 주민자율방범봉사대 활동계획서					봉사대명		서울특별시 강남구 ○○동 주민자율방범봉사대			대표자	성 명	생년월일	연락처		주 소				방법 현황	초 소 위치		(연락처 :)		총 인 원				초 소 형태				초 소 크기				방법 활동	시 설 · 장 비				목적					계획		(6하 원칙에 의거 작성)			순찰 동선 범위					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에 따라 20 년 방법대 활동계획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					구비서류	1.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현황 1부 2. 주민자율방범봉사대 대원 명단 1부 3. 주민자율방범봉사대 근무조 편성표 1부			
주민자율방범봉사대 설립 및 등록 신고서				처리기간 7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설립자	① 대표자	한 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성명	한 자	② 생년월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③ 주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내용	④ 명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⑤ 목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⑥ 초 소 위치		(연락처 :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⑦ 총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⑧ 시 설 · 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⑨ 설 립 연 월 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⑩ 순 찰 동 선(범 위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·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비서류	1.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현황 1부 2. 주민자율방범봉사대 대원 명단 1부 3. 주민자율방범봉사대 근무조 편성표 1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 년 주민자율방범봉사대 활동계획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봉사대명		서울특별시 강남구 ○○동 주민자율방범봉사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표자	성 명	생년월일	연락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주 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방법 현황	초 소 위치		(연락처 :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총 인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초 소 형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초 소 크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방법 활동	시 설 · 장 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목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계획		(6하 원칙에 의거 작성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순찰 동선 범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에 따라 20 년 방법대 활동계획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비서류	1.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현황 1부 2. 주민자율방범봉사대 대원 명단 1부 3. 주민자율방범봉사대 근무조 편성표 1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지 제2호서식]</p>	<p><현행과 같음></p>	<p>[별지 제2호서식]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()동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설립 등록증(제3조 관련)				
설립자	①성명	한글 한자	② 주민등록번호	
	③주소			
신청내용	④명칭			
	⑤목적			
	⑥주소위치		(연락처 :)	
	⑦총인원			
용	⑧시설·장비			
	⑨설립연월일			
<p>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율방범봉사대 등록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강 남 구 청 장</p>				

[별지 제3호서식]
주민자율방범봉사대 근무일지 및
차량운행일지

<현행과 같음>

()동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접수·통보서(제7조 관련)				
대표자	성명	한글	생년월일	
	주소			
구분		내용		
신	봉사대명			
청	주소위치		(연락처 :)	
개	총인원			
요	시찰·경비			
<p>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자율방범봉사대 계획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을 통보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강 남 구 청 장</p>				

<현행과 같음>

